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위탁교육훈련 계획 및 운영의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내 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²⁾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1조에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기준³⁾이 정의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전행정부 훈령, 2013. 3. 25.)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포함)·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기간(2016. 11. 14.~11. 30) 동안 창원시 공무원의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계획 및 운영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분야,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서 위탁교육

2) ①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②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기간, ③ 교육훈련의 종류별·분야별 인원, ④ 교육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⑤ 교육훈련 이수 후의 보직계획, ⑥ 교육훈련경비의 명세 및 교육훈련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⑦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3) ①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②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③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④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⑤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훈련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체계로 운영되었다.

학위과정의 대학교(원) 위탁교육은 학위과정 특성상 입학 후 졸업까지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보아 운영함이 타당하나 창원시에서는 기존에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학위 과정을 수강중인 공무원도 매년 실시하는 수요조사에 신규로 신청하여 선발되는 경우에 1년간 교육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됨으로써 교육비를 지원받는 자가 중도에 학업포기, 성적불량 등으로 졸업을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학교(원) 교육비 지원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대학교(원)는 최소 4회 이상 지원내역이 있어야 하나 [표1] 과 같이 교육비가 2회 또는 3회만 지원되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지 않았다

【표 1. 등록금 4회 미만 지원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지원시기 및 금액		비 고
1	○○구	○○○○*급	○○○	'12년 상반기	650,000원	○○대학교
				'12년 하반기	650,000원	
				'13년 상반기	650,000원	
2	○○소방서	○○○	○○○	'14년 상반기	350,000원	○○사이버 대학교
				'14년 하반기	350,000원	

공무원 국내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지원을 위해 예산확보 내역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별·학기별로 50명에게 900,000원씩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표2] 와 같이 선발인원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생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이 보다 적은 700,000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지급됨으로서 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생 선발 시에는 자체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선발대상 요건의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전공(한약재개발, 음악학, 요가명상학 등)을 수

강하는 공무원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여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한 시정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표 2. 년도별 위탁교육 및 예산 현황】

년도		선발 인원	개인별 지원금액(원)		확보예산
			일반	사이버	
2015년	상반기	42	700,000	350,000	90,000,000원 (900,000원*50명*2회)
	하반기	30	700,000	350,000	
2014년	상반기	54	700,000	350,000	90,000,000원 (900,000원*50명*2회)
	하반기	46	700,000	350,000	
2013년	상반기	61	650,000	325,000	84,600,000원 (900,000원*47명*2회)
	하반기	44	650,000	325,000	

국내 위탁교육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의무복무 기간이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교육 후 의무복무 위반에 따른 교육비 환수처리를 위해 교육비 지원자의 퇴직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위과정 위탁교육훈련계획 수립하시기 바람
- ② 입학부터 졸업까지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발 시 전공내용이 시정업무와 연관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시고
- ③ 학위 미취득자 또는 의무복무 기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수하시기 바랍니다.